10대 미혼모 교육권 보장: 독일 사례

정재훈(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1. 개념 정의 및 실태

1.1. 개념 정의

독일에서 미혼모(未婚母)는 혼인 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혼자 아동 양육을 담당하는 여성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대체로 혼인 관계 이후에 홀로 자녀 양육을 담당하게 된 경우를 모(부)자 가정이라 하고, 혼인 관계 외 혹은 이전에 출산을 한 경우를 미혼모라 분류하는 경향과 차이를 보인다. 즉 독일의 경우 미혼 여성, 별거 중인 여성, 이혼 여성, 그리고 미망인이 된 여성이 부양해야 할 아동을 데리고 가계를 이끌어 나가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독신(양육)모(Alleinerziehende Mutter: 혼자 자녀 양육을 하는 여성)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따라서 독일 상황에서는 우리식의 미혼모를 독신모(獨身母)로 지칭하는 것이 타당하다.

1.2. 사회복지정책 대상 집단으로서 독신모

독신모는 독일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그룹이다. 일부에서 마치 독신모가 여성해방의 상징처럼 인식하는 것은 가끔 영화나 소설에서 묘사하는 소위 “캐리어 우먼”을 보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독신모를 동일 집단으로 묘사하기에는 물론 무리가 있을 만큼 독신모 개개인의 생활사는 다양하다. 그러나 혼자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문제는 개인의 해결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사회 구조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독신모로서 겪어야 하는 공통 문제가 독신모가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근거를 제시한다. 독일 사회복지정책이 독신모의 문제로 규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취약한 경제적 자립 기반, 주거 문제, 혼자 아동 양육을 담당하면서 생기는 심리적 육체적 부담,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고립, 취업과 가사를 혼자 병행해야 하는 부담.

더 나아가 10대 독신모, 즉 미성년 독신모는 특히 아동 · 청소년지원법(Kinder- und Jugendhilfegesetz: KJHG)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아동 · 청소년지원법은 10대 청소년이 독신부모가 되었을 경우에 겪을 수 있는 문제들 - 학교 교육의 지속,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보육시설 이용 기회의 제한 등 -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적 개입의 토대가 된다. 이러한 개입은 10대 독신부모의 국적에 따른 제한 없이 이루어진다.

1.3. 실태

일반적으로 독일에서 독신부모 숫자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사이에 약 26만 여명이

늘어나서, 2005년 현재 약 250만 명 정도를 헤아린다. 독신부모가 된 이유는 절반 가량(55%)이 이혼이나 별거이다. 사별의 경우는 23%, 혼인하지 않은 경우도 22%에 달한다. 전체 자녀 양육 가구에서 독신부모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구서독 지역은 19%, 구동독 지역은 24%에 달한다.

이 가운데 10대 독신모가 어느 정도 규모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다. 다만 10대 청소년 중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 일정 정도가 10대 독신모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표>를 보면 시설에 거주하거나 보호주거 형태에서 살고 있는, 혹은 사회교육적 개별보호를 받고 있는 12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 약 4만 여명 중 10대 독신모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10대 독신모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선 10대에서 임신하는 경우가 매우 낮은 비율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만 해도 전체 임신 중 10대 임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11% 정도가 되었는데, 2000년 대에 들어서 그 비율이 약 3%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1)]

1) http://www.eltern.de/forfamily/schule_erziehung/erziehung/schwangerschaft_minderjaehrig.html?p=2 에서 2007년 10월 25일 내려받음.

<표 1> 시설 이용 요보호 아동 · 청소년 실태

	합계	주간시설 (Tagesgruppe) 보호	위탁가정보호 (Vollzeit-pflege in einer anderen Familie)	수용시설, 기타 보호주거 (Heim-erziehung; sonstige betreute Wohnform)	사회교육적 개별보호 (Intensive sozial-pädagogische Einzel-betreuung)
합계	131 005	16 543	50 364	61 806	2 292
연령					
1세 미만	1 034	16	813	205	-
1세 이상 3세 미만	3 684	111	3 050	523	-
3세 이상 6세 미만	8 599	278	6 901	1 420	-
6세 이상 9세 미만	14 543	2 799	8 324	3 420	-
9세 이상 12세 미만	22 629	6 954	8 635	6 994	46
12세 이상 15세 미만	29 032	4 844	9 805	14 093	290
15세 이상 18세 미만	37 801	1 478	9 989	25 200	1 134
18세 이상 21세 미만	12 472	55	2 638	9 032	747
21세 이상	1 211	8	209	919	75

출처: 독일 통계청[2)]

게다가 10대 독신모의 경우에 대부분 학교 교육 대상자로 볼 수 있는데, 학교 교육은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정부 소관 영역이다. 따라서 각 주별로 흩어져 나오는 학교 교육을 필요로 하는 10대 독신모 현황 파악과 지원 대책 수립은 그리 관심을 끄는 정책 영역은 아닌 셈이다. 예를 들어, 작센-안할트(Sachsen-Anhalt) 주 지역 전체에서 1년에 20명 정도 나오는 10대 독신모 학생을 위한 단일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정책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10대 독신모는 대체로 학교나 직장, 가족 생활에서 상당한 갈등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Schneider,2001:123). 이러한 갈등 상황은 가정폭력 피해, 학교 등교 안하기, 약물 남용, 성매매, 시설 수용과 가정 사이를 오가는 일상, 문화적 정체감 상실, 비행, 사회적 소외 등 문제로 구체화된다. 문제를 가진 10대 독신모들은 교육적 · 치료적 도움을 거부하는 태도를 쉽게 보이며 또한 전문가의 개입을 매우 회의적으로 보며 전문가와의 관계 형성을 불신하거나 혹은 피해의식에 기초하여 이해하는 특징을 보인다.

---

2) http://www.destatis.de/jetspeed/portal/cms/Sites/destatis/Internet/DE/Content/Statistiken/Sozialleistungen/KinderJugendhilfe/Tabellen/Content100/AusserhElternhaus__persMerkmale,templateId=renderPrint.psml 2007년 10월 20일 내려받음.

10대 독신모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체로 문제 상황이 발생한 가족(Herkunftsfamilie)으로부터 일단 격리시키고 주로 시설 거주 등을 시작으로 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과정이 시작된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이, 규모의 특성과 독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갖는 보편주의적 특성상, 10대 독신모를 위한 정책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전체적으로 독신모 지원정책과 아동 · 청소년 지원정책의 맥락에서 10대 독신모도 정책 대상으로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2. 독신모 지원 정책

독신모 지원정책 내용은 일반적 차원의 내용과 특히 수용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10대 독신모 대상 프로그램으로 분류할 수 있다. 10대 독신모의 경우,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교 교육을 계속 받으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대체로 시설 거주를 선택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결국 10대 독신모 당사자의 교육권 보장과 10대 독신모 자녀의 아동권 보장을 위한 조치가 시설 수용 형태로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먼저, 일반적 차원의 독신모 지원정책을 주로 생계 보장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주로 수용시설에 거주하는 10대 독신모를 위한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2.1. 생계 보장

생계 보장 관련 정책 내용으로는 취업활동 지원, 아동수당, 취업활동으로 인한 아동보호 비용 지원, 사회부조와 주거수당 등이 있다.

2.1.1. 취업활동 지원

임신 · 출산 여성을 위한 취업활동 지원 내용은 고용보호 및 모성보호수당, 취업활동 시간 조절이 있다.

2.1.1.1. 고용 보호 및 모성보호수당

취업활동 중에 여성이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혼인 지위 여부를 막론하고 모성보호법(Das Mutterschutzgesetz)에 근거한 보호를 받는다. 이에 따라 임신 여성은 태아와 본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을 권리, 하루에 4시간 이상 서서 하는 일을 하지 않을 권리, 야간 · 휴일 · 일요일 근무를 하지 않을 권리, 출산 예정일 6주전부터 일하지 않을 권리, 출산 후 8주 동안 일하지 않을 권리 등을 갖는다.[3] 이런 권리들을 행사하여 일하지 않는 기간에도 사용자는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모성보호규정은 임신 여성이 업무보조, 임시직, 시간제 근무, 정규직 근무를 하든지 간에 모든 고용 형태를 막론하고 적용된다. 또한 출산 후 16주 동안은 고용보호를 받기 때문에 출산여성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해고되지 않는다.[4]

---

3) 조기출산이나 쌍둥이 이상 출산일 경우 이 기간은 12주로 늘어난다(모성보호법 9조).
4) 모성보호법 2,3,4조 참고.

임신 · 출산 여성이 의료보험조합 가입자이면서 질병수당(Krankengeld)을 받을 자격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모성보호 기간 동안 모성보호수당(Mutterschaftsgeld)을 받는다. 모성보호수당은 매일 최고 13유로씩 계산되며, 이 금액이 해당 여성의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사용자가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임신 · 출산 여성의 연령, 혼인상 지위 여부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2.1.1.2. 취업활동 시간 조절

취업활동 시간 조절은 임신 · 출산 여성이, 특히 독신모가 취업 활동을 계속하고자 할 때 매우 중요한 지원 내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먼저 임신 · 출산 여성이 시간제 근무를 하는 경우를 보자. 시간제 근무라 함은 업무 보조 등 임시직 업무부터 시작하여 주당 30시간을 넘지 않는 근무를 의미한다(VAMV,2004:40). 최소 15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서 일하는 임신 · 출산 여성은 사용자와 합의하여 정규직 근무를 시간제 근무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 규정 역시 임신 · 출산 여성의 연령, 혼인상 지위 여부를 막론하고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다.

2.1.2.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취업활동을 통해 납부한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개념(Rückerstattung ziviel bezahlter Steuer)으로 지불하는 것이다. 아동의 최저생계보장 비용은 면세 영역으로 남아야 한다는 이념 때문이다. 2007년 현재 독일에서는 첫째에서 셋째 자녀까지는 월 154유로, 넷째 자녀부터는 월 179유로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 출생 후 18세까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아동이 계속 재학 중이거나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에 25세까지 연장해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 취업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10대 독신모들의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자신의 취업활동을 근거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무상보상(Förderleistung) 형태로 받는다고 표현할 수 있다.

2.1.3. 취업활동으로 인한 아동보호비용

취업활동 때문에 자녀를 보육시설이나 다른 사람에게 맡기게 될 경우에 생기는 비용의 2/3까지 혹은 연 최고 4,000유로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보호비용이 연 6,000유로가 될 경우 소득공제혜택 4,000유로를 받게 된다. 아동보호비용이 연 1,000유로일 경우에는 666유로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아동보호비용이 연 8,000유로를 넘을 경우에는 2/3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니라 4,000유로까지만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독신부모의 경우에는 연소득 중 1,308유로를 부담경감지원액(Entlastungsbetrag) 명목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러한 혜택의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 24조b(§ 24b des Einkommensteuergesetzes: EStG)이다.

2.1.4. 사회부조와 주거수당(Wohngeld)

독신부모를 위한 중요한 생계보장제도가 사회부조(Sozialhilfe)이다. 일반적인 공공부조제도로서 사회부조가 독신모에게 의미가 있는 내용은 독신부모로서 사회부조 수급 자격을 갖게 되면 독신부모 추가급여를 받는다는 것이다. 사회부조 급여 내용은 대체로 '가장 기본급여(Regelsatz für Haushaltsvorstand)', 자녀 기본급여, 주거 비용, 난방 비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독신부모는 '가장 기본급여'에 더하여 '독신부모 기본급여'를 월 약 100유로 정도를 더 받는 셈이 된다. 또한 사회부조 수급자가 되면 자동적으로 주거수당 수급 자격을 얻게 된다.

10대 독신모의 경우에 독립가구를 이루어 사는 경우에는 언급한 사회부조급여와 주거수당 수급 자격을 갖는다. 그러나 10대 독신모 대부분은 부모와 함께 살거나 수용시설에 거주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사회부조와 주거수당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수용시설에 거주할 경우에 아동·청소년 지원법에 근거하여 시설 거주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이 비용의 규모는 시설과 시설소재 지역 사회국(Sozialamt)에서 합의하여 결정한다.

사회부조제도가 10대 독신모 대상 서비스에서 아동·청소년지원법 외에도 중요한 법적 토대가 되는 이유는 사회부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관련 조항 때문이다. 사회부조법 76조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5)]

첫째, 비용 부담 주체로서 공공기관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서비스 제공의 목적, 서비스 내용, 서비스의 질적 수준 등에 대해 서비스 제공 이전에 구체적인 합의를 보아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은 공공기관과 합의한 수준과 내용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은 충분하고 목적에 부합하며 경제적이면서도 최소한의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둘째, 공공기관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에 지불하는 비용에는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의식주 조달을 위해 필요한 항목이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에서 투자해야 하는 비용도 고려하여 적절한 비용 부담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시설 투자비용은, 해당 비용에 대해 공공기관이 해당 사회복지서비스 전달기관과 합의를 받을 때에만 사회복지서비스 비용 부담에서 고려하는 요소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셋째, 사회부조 제공 공공기관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관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경제성(Wirtschaftlichkeit) 보장을 위한 기본적 원칙에 합의를 보아야 한다. 또한 경제성과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도 합의를 보아야 한다. 서비스 내용 및 수준에 대한 평가 결과는 적절한 형태로 구성되어 클라이언트에게도 알려져야 한다. 사회부조 제공 공공기관은 수용시설관리부서(Heimaufsichtsbehörden), 의료보험조합 심사판정위원회(der Medizinische Dienst der Krankenversicherung)와 협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중평가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정재훈,2007:205).

2.2. 10대 독신모의 교육권과 양육권 보장 실태

2.2.1. 논의의 전제

---

5) § 76 des SGB 12

일단 가족을 이루어 살아간다면, 즉 부모가 자녀를 일정한 공동체에서 양육하는 형태로 살아간다면 특정 가족 형태와 관계없이 가족정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급여 수급 자격을 갖게 된다. 따라서 독신모라고 해서 가족정책 제공 급여 대상자에서 특별히 제외될만한 이유가 없다. 여기에 더하여 10대 취학 연령에 학교를 다니는 10대 독신모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 급여가 제공된다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특수 상황은 대체로 시설 수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에 거주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아이를 계속 양육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알아보고, 거주시설에서 10대 독신모가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2.2.2. 10대 독신모 대상 사회복지정책 개입의 근거로서 아동 · 청소년지원법

사회법전(Sozialgesetzbuch: SGB) 8권은 아동 · 청소년복지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며, 따라서 '아동 · 청소년지원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법 22조 a항에서는 일일이용시설(Tageseinrichtungen)을 이용하는 아동 ·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질 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정재훈,2007:204).[6)]

첫째, 아동 · 청소년 대상 사회복지서비스를 관장하는 공공기관은 시설 제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러한 조치를 발전시킬 의무를 갖는다. 이러한 의무를 실천하기 위한 기본적 토대로서 교육적 개념을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적용해야 한다. 또한 시설 제공 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와 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공공기관은 시설 근무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아동 · 청소년 보호서비스 인력(Tagespflegepersonen)이 양육권자와 아동 · 청소년의 복지와 양육환경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시설에서 근무하는 아동 · 청소년 사회복지서비스 전문가들이 지역사회 다른 아동 · 가족 관련 기관이나 상담소, 공동체와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또한, 아동 ·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하여 학교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아동 · 청소년 대상 사회복지서비스는 교육적 · 조직적 차원에서 아동 · 청소년과 가족이 갖는 욕구에 반응해야 한다. 휴가로 인하여 시설이 운영을 하지 않는 사이 아동 · 청소년이 양육권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공공기관은 대체보호 기회를 제공해야할 의무를 갖는다.

넷째, 여건이 허락하는 한 장애가 있는 아동 · 청소년과 장애가 없는 아동 · 청소년은 한 집단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아동 · 청소년 서비스를 관장하는 공공기관은 사회부조(Sozialhilfe) 제공 공공기관과 서비스 제공 관련 계획 · 개념 설정 · 재정 조달 등 문제와 관련하여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한다.

즉 이러한 법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은 비영리 복지단체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통제할 수 있다. 반면, 비영리 복지단체에서는 자신들이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이러한 법 규정에서 찾으면서 적절한 지원을 공공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아동 · 청소년지원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 10대 독신모 관련 규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

6) § 22a des SGB 8

같다.

첫째, 10대 독신모 문제에 개입하는 일반적 원리를 제시하는 조항을 찾아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지원법(Kinder- und Jugendhilfegesetz: KJHG) 1조 3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은 개인적·사회적 차원에서 성장하기 위한 도움과 어려운 삶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부모가 자녀교육을 위한 상담과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권리도 같은 법에 명시되어 있다. 결국 이 법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장 발달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것을 국가와 사회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맥락에서 10대 독신모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자신의 성장에 되는 도움을,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필요한 도움을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둘째, 10대 독신모 양육 아동의 보육시설 우선 이용 권리이다. 아동·청소년지원법(Kinder- und Jugendhilfegesetz: KJHG) 24조는 독일에 거주하는 만 3세 이상 6세 이하 아동은 적절한 보육시설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독신부모가 (취업)교육 과정에 있거나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아동보다 우선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7] 이 법 규정에 따라 10대 독신모도 다른 부모들보다 우선하여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아동·청소년지원법 규정이 10대 독신모 대상 서비스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개념이 사회교육적 개별보호(sozialpädagogische Einzelbetreuung)라고 할 수 있다. 사회교육적 개별보호 개념에 따라 주로 거주시설을 중심으로 하여 각종 대인서비스가 제공된다.

2.2.3. 사회교육적 개별보호(sozialpädagogischen Einzelbetreuung)

'사회교육적 개별보호'는 다른 정책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독신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다. 아동·청소년의 복지가 위협받는 환경에 처할 경우 보호자는 양육을 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사회법전 8장 27조). '아동·청소년 복지가 위협받는 환경'이라 함은 아동·청소년의 성장을 저해하는 구체적 위험이 존재하고 그 위험 상황이 변할 가능성이 없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사회적·심리적·개인적 사회화 과정이다. 아동·청소년은 어떤 위험을 겪고 있는데 주변 환경이 그러한 위험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보겠다. 이 경우에 아동·청소년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보호자는 적절하고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다. 이 경우에 어느 종류의 도움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받아야 할 지는 사회법전 8권 36조에 근거하여 결정하게 된다.

사회교육적 개별보호는 사회법전 8권 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움의 형태이다. 사회적 개별보호가 특히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연령대는 14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이다. 청소년은 사회통합과 자주적인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개별적이면서도 집중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권리에 따른 개별보호는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도 개별적 욕구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다. 개별보호가 이루어지는 기간과 보호의 구체적 내용은 보호자, 당사자로서 청소년, (시설 거주의 경우) 담당 사회복지사, 재정 지원을 하는 지역 청소년국(Jugendamt) 담당

---

7) 아동·청소년지원법 24조 a(4)2: "Kinder, deren Eltern oder alleinerziehende Elternteile eine Ausbildung oder Erwerbstätigkeit aufnehmen oder an einer Maßnahme zur Eingliederung in Arbeit im Sinne des Vierten Gesetzes für moderne Dienstleistungen am Arbeitsmarkt teilnehmen, besonders zu berücksichtigen."

공무원이 합의하여 구성하고 문서로 작성하여 남겨놓게 된다.

사회교육적 개별보호가 갖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10대 독신모의 경우에는 대체로 이 프로그램에 따른 보호를 받게 된다. 10대 독신모의 대부분이 어려운 가족관계를 갖고 있고 사회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가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회교육적 개별보호가 추구하는 개입 목적은 문제 상황에 있는 청소년이 연령에 맞는 지원 · 격려 · 동반자적 도움을 통해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2.2.4. 거주시설 서비스 내용

2.2.4.1. 법적 근거

시설에 거주할 경우 10대 독신모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법적 근거는 사회법 8권 78조(§78 SGB VIII)에 토대를 둔 아동 · 청소년지원법 27, 34, 35a, 41조이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독신모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 · 청소년이 시설 거주를 할 경우에 적용된다.

2.2.4.2. 서비스 전달체계 구성 요소

10대 독신모가 시설에 살 경우 보호자와 보호를 받는 10대 독신모 수 비율은 2대 1을 넘지 않는다. 시설은 이 비율을 지키는 선에서 지역 사회국(Sozialamt)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보호자의 인적 구성은 보육사(ErzieherInnen), 사회교육사(SozialpädagogInnen), 사회복지사(SozialarbeiterInnen) 등으로 이루어진다. 아동 · 청소년지원법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하여 전문적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먼저, 현재 문제가 되는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상담과 대화는 필수 전제 조건이다. 상담과 대화 시간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구조화되어 있어야 한다. 즉 정해진 상담과 대화 시간이 계획표에 있어야 한다. 둘째, 개입해야 할 위기 상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위기 상황이 갖는 모습에 대한 합의는 부모, 10대 독신모 당사자, 담당 사회복지사 혹은 아동보육사, 재정 지원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청소년국(Jugendamt) 담당 공무원이 함께 모여서 하게 된다. 셋째, 집단 활동, 체험 학습, 부모 상담 등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다른 상담소, 거주 시설, 공무원이나 관계 당국과 늘 긴밀한 협조 관계를 맺으면서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특히 10대 독신모의 경우 시설 · 공무원과 학교 관계자 간 정보 교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상황이 허락한다면 그룹홈이나 보호주거(Betreutes Wohnen) 형태로 전환하여 시설 거주 청소년의 사회적 자활을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서비스 구조를 전제 조건으로 하여 시설거주 10대 독신모를 돌보는 전문가는 개별 상황에 적합한 원조 계획을 짜야 한다. 이 원조 계획은 재정을 담당하는 지역 청소년국에서 검토하게 되는데, 필수적인 교육적 욕구(notwendiger erzieherischer Bedarf)가 반영되었는지가 계획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10대 독신모가 처한 상황 분석 자료를 작성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은 전문성과 자원동원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문제 분석에 근거하여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과 과제를 정하게 되면 서비스 전달과 개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의 규모를 서비스 제공 기관과 재정 담당 지역 청소년국

(Jugendamt)이 협상하게 된다. 협상 과정에서 청소년국은 서비스 제공 기관이 제시한 서비스 내용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가 끝나면 담당 공무원과 서비스 제공 기관 전문가가 함께 만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자리를 갖는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는 것이다.

원조 계획이 시행되었지만 개선의 여지가 발견될 경우에 담당 공무원은 즉시 서비스 제공 기관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서비스 제공 기관은 즉시 원조계획 수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공하고 있던 도움 외에 더 필요한 도움을 주는데 있어서 다른 서비스 전달체계의 도움과 법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현재 도움을 주고 있는 서비스 전달기관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도움을 주는 과정에 참여하는 담당 공무원과 서비스 제공 전문가는 사회법전 8권 65조에 근거한 '비밀유지 의무(Schweigepflicht)'가 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형법 203조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2.2.4.3. 서비스 전달 방향

시설에 거주할 경우 10대 독신모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적 개별보호에서는 아침에 제시간에 일어나 아이의 먹을 것을 챙겨 주고 자신이 학교에 갈 준비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으로 일상을 시작한다. 엄마가 학교에 간 사이에 아이는 (0세에서 3세 사이일 경우에는) 시설 근무 사회복지사와 아동보육사가 돌봐 주지만, 방과 후 엄마가 시설로 돌아오면 아이 양육 책임을 전적으로 맡는다. 장보기, 식사 준비, 아이 먹을 것 마련하기 등을 스스로 하면서 학교 과제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10대 독신모는 함께 시설에 살고 있는 다른 독신모들과 함께 일상을 조직하고 협력하는 경험을 한다.

시설 거주 10대 독신모들의 일상 조직과 협력 과정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동반자적 역할을 사회교육적 개별보호 과정에서 사회복지사, 아동보육사, 사회교육사 등 전문가들이 하고 있다고 보겠다.[8] 전문가들은 동반자적 개입 과정에서 10대 독신모들이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첫째, 개인적 · 사회적 · 성적(性的) 정체성을 발전시킨다. 둘째, 같은 혹은 비슷한 연령층 독신모들과 더 성숙하고 동반자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적절한 인적 관계망을 형성한다. 셋째, 부모 혹은 주변의 다른 성인들로부터 감정적으로 독립함으로써 본래 출생가족(Herkunftsfamilie)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한다.[9] 넷째, 취업 준비를 하고 새로운 파트너쉽을 형성하고 가족생활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 다섯째, 자신이 하는 행동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고, 따라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세를 배운다. 여섯째, 자신의 행동을 이끌어나가는 지침으로서 가치 체계와 윤리 의식을 확립하도록 한다. 일곱째, 교우 관계에 자신을 스스로 통합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여덟째, 자신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사회 · 심리적 행동 개념을 확립한다. 아홉째, 폭력 · 약물 남용 · 정체감 상실 등에서 경험했던 갈등을 소화시키는 능력을 기른다. 열 번째, 일상을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여가 시간을 의미있게 활용하도록 한다.

시설 거주 10대 독신모가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동반자적 역할을 하기 위하여 서

8) 독일 트리어 시 소재 안나(Anna) 재단 운영 10대 독신모 거주시설 일상의 예.
9) 문제 상황을 유발하는 가족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비스 제공 전문가는 10대 독신모의 문제와 위기 상황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 기관과 담당 공무원 간 연락 체계가 긴밀하게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연락 체계는 10대 독신모가 다니는 학교 관계자와 또다른 정보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

대개의 경우 이렇게 구축된 원조 네트워크 내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사회교육적 개별보호 사례는 기록으로 정리되어 일주일에 한번 혹은 최소한 이주일에 한번 사례관리 분석 자료로서 정리되어 전문가와 공무원 간 공유된다. 이 기록을 토대로 개별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대개의 경우 사회복지사 혹은 사회교육사)는 10대 독신모가 재학 중인 학교 교사와 (부모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연락 관계를 유지한다. 이 사례관리 기록은 10대 독신모 당사자도 알 권리를 갖는다. 또한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해당 사례 관리와 관련하여 업무 수퍼비전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서비스 전달 방향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서비스 제공 기관은 재정을 담당하는 지역 청소년국에게 서비스 비용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2.2.5. 학교 교육 지원

독일 교육 과정 운영은 주정부 자치 문제이다. 따라서 학교 생활 도중 임신 · 출산 경우가 생긴다면 주정부마다 대응책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임신 · 출산을 지원하는 모성보호법, 아동 ·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는 아동 · 청소년지원법, 그리고 기본적인 생계보장을 해주는 사회부조법 등에 근거하여 학교 생활 도중 임신 · 출산은 보통 여성이 임신 · 출산하는 것과 같은 대우와 권리를 갖는다.

2.2.5.1. 임신 · 출산의 경우

임신 · 출산의 사유로 학교를 못다니게 되었을 경우에는, 혹은 다니고자 하는 의향이 없을 경우에는 질병의 사유로 출석 인정을 받는 것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된다. 각 주 정부는 질병 때문에 불가피한 결석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주 교육부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병으로 인하여 10일 이상 혹은 시간제학교(Teilzeitschule)의 경우에는 3일 이상 학교를 나오지 못하게 될 경우에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는 의사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다. 질병 발병 정도가 빈번하여 학생의 수학 능력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도 담임교사는 해당 학생에게 의사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상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에 학교 교장이 직권으로 의사의 공식적인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보건소나 의료보험조합 소속 의사가 인정하는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휴학을 할 수 있다." [10]

---

10) "Bei einer Krankheitsdauer von mehr als zehn, bei Teilzeitschulen von mehr als drei Unterrichtstagen, kann der Klassenlehrer vom Entschuldigungspflichtigen die Vorlage eines ärztlichen Zeugnisses verlangen. Lassen sich bei auffällig häufigen Erkrankungen Zweifel an der Fähigkeit des Schülers, der Teilnahmepflicht gemäß § 1 nachzukommen, auf andere Weise nicht ausräumen, kann der Schulleiter vom Entschuldigungspflichtigen

학생의 임신 · 출산과 관련하여 질병 사유와 동일하게 처리하는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신 때문에 학교를 올 수 없거나 혹은 올 의향이 없는 여학생은 질병 때문에 학교에 올 수 없는 학생과 같은 상황으로 대우한다. 직업학교 재학생의 경우에는 임신 때문에 취업 훈련 장소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에 이와 동일한 대우를 한다." 11)

이렇게 볼 때, 재학 중 학생이 임신을 하고 이에 따라 결석을 할 경우에 출석 처리를 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한 요양의 경우에 휴학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신 · 출산의 이유로 휴학을 하는 경우도 인정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2.5.2. 재학 생활 지원

독일의 경우 교육정책은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정부 소관임을 앞에서 이미 밝혔다. 따라서 학교 교육 지원 내용은 주마다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학교 교육에 필요한 자료와 도구(이하 수업자료: Lernmittel)를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지원하는 정책 방향은 동일하다. 이러한 정책은 10대 독신모가 추가 비용없이 학교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수업자료 무상지원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0대 독신모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회적 낙인없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지원받는 수업자료는 수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학생이 필요로 하는 모든 수단이다. 여기에는 교과서, 언어사전, 백과사전, 공책 등이 포함된다.

3. 독일 사례의 시사점

독일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먼저 용어 사용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와 달리 독일에서는 혼인 여부를 중심으로 미혼모와 모(부)자가정을 분류하고 있지 않으며, 모두 독신부모(Alleinerziehende Eltern) 가정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대상으로서 '10대 미혼모'도 '10대 독신모(獨身母)'로 표현하는 것이 독일식 개념으로는 적당하게 된다.

---

die Vorlage eines ärztlichen Zeugnisses verlangen. In diesen Fällen und unter den gleichen Voraussetzungen bei langen Erkrankungen kann der Schulleiter auch die Vorlage eines amtsärztlichen Zeugnisses verlangen... Heilkuren oder Erholungsaufenthalte, die vom Staatlichen Gesundheitsamt oder vom Vertrauensarzt einer Krankenkasse veranlasst oder befürwortet worden sind."

- http://www.wara.de/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47&Itemid=33에서 2007년 10월 26일 내려받음.

11) "Eine Schülerin, die wegen ihrer Schwangerschaft die Schule nicht besuchen kann oder will, ist wie eine Schülerin zu behandeln, die wegen Krankheit den Unterricht nicht besuchen kann. Für Schülerinnen der Berufsschule gilt dies nur insoweit, als sie wegen ihrer Schwangerschaft nicht mehr in ihrer Ausbildungs- oder Arbeitsstätte tätig sind."

- http://www.wara.de/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47&Itemid=33에서 2007년 10월 26일 내려받음.

두 번째, 용어 사용에서의 전향성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도 독신모는 여전히 사회복지정책적 개입의 대상 집단이 되는 사회적 약자층의 상당수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회적 사실이다. 다만, 10대 독신모의 경우에는 전체 독신모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적고, 게다가 10대 독신모를 학생 집단의 일부로서 설정하고 정책적 접근을 할 경우에는 정책 주체가 연방정부(Bundesregierung)가 아니라 주 정부(Landesregierung)가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독자적 대상 집단으로서 10대 독신모의 존재는 대체로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정책의 독자적 대상 집단이 아닌 것이 정책 대상 집단에서 소외됨을 의미하는 것을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독신모 집단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독립적인 정책 영역이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 즉 가족정책 영역에서 독신(부)모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10대 독신모 역시 일반적으로 가족이, 그리고 독신부모가 받을 수 있는 취업활동 지원 프로그램, 아동수당, 취업활동으로 인해 생기는 비용 보조, 사회부조, 주거수당 등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네 번째, 일반적인 가족정책 영역에서 독신부모가 대상 집단이 되는 것처럼, 10대 독신모는 일반적인 아동 · 청소년지원법에 근거하여 필요로 하는 보호를 받게 된다. 즉 문제 상황에 처한 아동 ·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독신모라는 상황에 근거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 내용에는 주로 시설 거주와 그와 연계된 사회교육적 개별보호 등 대인복지서비스가 포함된다.

다섯째, 학교 교육 과정 중에 생기는 임신 · 출산으로 인한 학업 중단 상황, 그리고 학교 교육 과정 이수에 필요한 비용 조달 등 문제 역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임신 · 출산으로 인한 학업 중단 상황은 질병으로 인한 학업 중단 상환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출석 인정 및 휴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비용 문제는 의무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행해지는 무상지원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상 내용을 정리해 보면 독일 사회에서 10대 독신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정책적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자녀 양육 부모가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을 모성보호법 · 아동수당법 ·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여 모두 받을 수 있다. 그리고 10대 청소년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아동 · 청소년지원법에 따라 시설 거주 우선권, 사회교육적 개별보호 등 대인복지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학생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수업권과 결석권, 휴학권 등 권리는 각 주 교육법에 근거하여 가지게 된다(표).

〈표 2〉 독신모 지원 정책 내용

일반적인 지원 내용	10대 독신모 우선 지원 내용	법적 근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도움을 우선 받을 수 있는 권리	아동・청소년지원법 (Kinder- und Jugendhilfe gesetz: KJHG) 1조 3절
보육시설 이용 권리	보육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아동・청소년지원법 (Kinder- und Jugendhilfe gesetz: KJHG) 24조
임신・출산 때 고용보호 및 모성보호수당	지원 내용 동일	모성보호법 (Das Mutterschutzgesetz)
아동수당	무상보상(Förderleistung)의 개념으로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법 (Kindergeldgesetz)
취업활동으로 생기는 아동보호비용 지원	지원 내용 동일	소득세법 24조b(§ 24b des Einkommensteuergesetzes: EStG)
최저생계비 보조와 주거수당	시설거주를 통해 해결	아동・청소년지원법
-	사회교육적 개별보호	사회법전 8권
-	수업자료 무상 지원	각 주 교육법
-	임신・출산으로 인한 결석의 출석 처리 및 휴학 인정	각 주 교육법

참고문헌

정재훈(2007), 독일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서비스, 서울: 집문당.

BMFSFJ(Bundesministerium fue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1997), Hilfen fuer alleinerziehenden Frauen in Problemsituation, Kohlhammer, Stuttgart.

Schneider, Norbert(2001), “Allein Erziehen - Vielfalt und Dynamik einer Lebensform,“ in: Theorie und Praxis der Sozialen Arbeit Nr.4/2001, S.123-128.

StBA(Statistisches Bundesamt) (1995), Statistisches Jahrbuch, Wiesbaden.

StBA(2006 Juni), Leben in Deutschland: Ergebnisse des Mikrozensus 2005, Wiesbaden.

VAMV(Verband alleinerziehender Mütter und Väter), Allein erziehend: Tipps und Informationen.